

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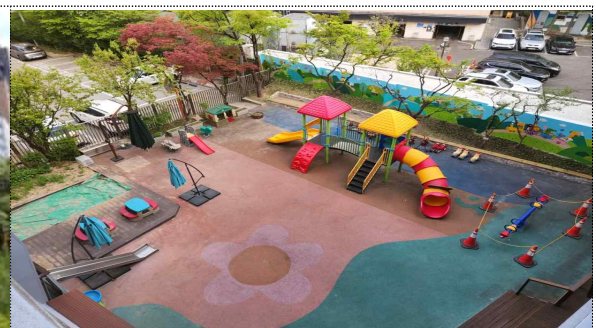
- 가.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,
- 나.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요
- 시설명 :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
 -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
 - 시설규모 : 지하 1층 ~ 지상 4층(연면적 2017.72㎡)
 - 인가일 : '95. 3. 6.(2000.3.3.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)



<어린이집 전경>



<실외놀이터>

나. 운영개요

- 정·현원 : 정원 195명, 현원 135명('22. 4월 말 기준)
 - ※ 3월 원아모집 기준 : 현원 150명
- 교 직 원 : 총 45명
 - 원장, 선임교사, 교사 33, 간호사, 영양사, 취사원 4, 관리사 등 4
 - ※ 원아 현원 증가 시, 교사 2인 추가 채용 예정
- 입학자격 : 만0~만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

다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'23.1.1.~'25.12.31.)
 - 향후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,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 2년 재계약 가능
- 위탁업무
 - 어린이집 운영전반(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)
 - 시설·장비·부품의 구매 및 관리
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
- '23년 예산(안) : 1,802백만원(보육료 수입 별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근거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1차 : '99.01월~'01.07월(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)
 - 2차 : '01.08월~'08.10월(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)

- 3차 : '08.11월~'11.09월(학교법인 숙명학원)
- 4차 : '11.10월~'14.09월(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)
- 5차 : '14.10월~'17.09월(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)
- 6차 : '17.10월~'20.09월(한솔어린이보육재단)
- 7차 : '20.10월~'22.12월(한솔어린이보육재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영유아보육법 제14조, 제24조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2조, 제4조, 제4조의3, 제6조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기 타

-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('22.4.22.)
- '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: '조건부 적정'
 - 법률자문 내용에 따라 5년 위탁은 가능하나 수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유도 등 이용고객을 위한 책무성 담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3년 위탁 후 중간 평가결과 등에 따라 2년 재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조정필요
-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수정계획 수립('22.5.17.)
- '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건부 적정
후속조치 심의결과 : '적정'

※ 작성자 : 인력개발과 후생팀 김미숙 (☎ 2133-5779)